

도시철도 광고대행 계약서

계약번호 : 제 호

계약자	발 주 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승강장 음성 광고대행 계약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一金	원정(W)	
	계약보증금	一金	원정(W) - 계약금액의 10%이상	
	지급보증금	一金	원정(W) - 계약금액의 10%이상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20 . 00. 00. (사업준비기간 30일 + 사업기간 5년)			
	사 업 기 간	2017. 00. 00 ~ 20 . 00. 00. (5년)			
	월 광고료	一金	원정(W)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알림문, 사업자 공모설명서 및 광고대행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입찰 전 사전 열람 숙지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하여 붙임서류의 계약조건으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계약내용에 대한 부지(不知), 계약상대자 귀책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조치와 제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이에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서류 1. 계약 일반조건 1부.
2. 계약대상 역사현황 1부.

2017. 00 . 00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발 주 자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223-3)
상 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표자 : (인)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발주자”라 합니다)와 광고대행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는 승강장 음성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준수합니다.

제2조(광고대행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50개 역사의 승강장 열차진입방송 장치를 이용한 음성광고 사업을 대행합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승강장 음성광고의 제작, 송출, 삭제(원복)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
2. 음성광고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
3. 기타 본 계약서에 열거한 사항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 . . .부터 20까지(사업준비 기간 + 사업기간)로 합니다.

② 사업운영 기간은 60개월(사업개시일 ~ 계약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③ 사업준비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계약체결 다음날 ~ 사업개시일 전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내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까지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2항의 각 호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특별약관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증금을 변경계약 체결 시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합니다.

제5조(지급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광고료, 연체료, 관리비, 기타 손해배상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조(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위약벌로써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잔여 손해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③ 발주자는 지급보증금 반환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할 연체료, 사용료, 손해배상, 기타의 미납금 순으로 지급보증금 및 물적담보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며, 이를 통해 전부를 청산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현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정상적인 계약기간 중에 기 납부한 보증금으로 광고료, 관리비 기타 제비용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광고료의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광고물 게재 실적과 관계없이 광고료를 발주자에게 납부하되,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월수로 분할한 해당 월광고료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광고료 계산은 10원 단위로 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③ 광고료의 납기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 미영업일인 경우에는 은행의 다음 영업일을 납기일로 합니다.

제8조(연체료) ① 계약상대자가 광고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료는 지정기일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발주자 부대사업규정 시행내규 제12조에 따른 연체요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제9조(광고료의 감면 및 추가 납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사정으로 음성광고 송출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발주자의 운영상 필요 또는 공익 목적으로 음성광고 송출을 연속 5일 이상 중단하였을 때

- 3. 기타 발주자의 책임으로 감면사유가 있다고 상호 인정될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1. 계약상대자가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음성 광고를 표출하였을 때
 - 2. 기타 추가 납부 사유가 있다고 상호 인정될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감면 또는 추가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계약물량으로 나눈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제10조(광고 심의 및 송출) ① 계약상대자는 음성광고를 송출 및 원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광고내용이 녹음된 음원을 첨부한 송출(원복) 승인 신청서를 시행 7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원복 시에는 광고 송출 전 파일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② 음성광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허가, 신고, 기타 심의 등에 따른 책임과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광고물의 송출 또는 원복을 위하여 역사를 출입할 때에는 해당시설의 관리책임자(역장, 기술사업소장 등)에게 사전에 작업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신실 출입시는 발주자 소속 직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음성광고의 운영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승강장 진입 시 전동차 진입안내 멘트를 포함하여 20초 이내에서 음성광고를 표출할 수 있으며, 역당 1개 광고주로 제한합니다.

② 음성광고의 음량이 전동차 진입안내 방송보다 크거나 음질이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합니다.

- 1. 전동차 진입 방송 및 음성광고의 송출·삭제
- 2. 전동차 진입 방송 및 음성광고의 변경 및 유지관리
- 3. 기타 전동차 진입 방송 및 음성광고의 유지관리 전반

제12조(계약물량 등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음성광고의 물량 및 대상역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언론보도 등 비판적인 사회여론이 조성되거나 의회 및 서울시 등의 시정권고 등이 있어 음성광고 대상역사 등을 조정하거나 송출을 중단할 것을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 2. 전동차 운행여건 변화와 방송장치의 교체 또는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된 물량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 3. 계약상대자가 물량 등의 변경을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9조 제3항을 기준으로 조정하며,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조정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조정기준일은 발주자가 승인한 날로 하고, 조정 작업에 따른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음성광고의 삭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광고방송을 삭제하고 원복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때
 2. 표출 승인이 취소된 때
 3. 기타 공익상 또는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계약상대자는 음성광고 표출 승인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승인받지 못한 음성광고를 표출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음성광고를 원복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원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발주자는 이를 원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그 대가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광고물 관리법규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규정 및 발주자의 광고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금지광고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음성 광고물을 설치·운용할 수 없습니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저촉되는 광고물
2.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규정에 저촉되는 광고물
3. 발주자의 광고관련 규정의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광고물
4. 기타 지하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제16조(재대행 금지) 계약상대자는 광고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대행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재산권 책임 등) ① 음성광고의 제작, 표출 등에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산업재산권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히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만일 분쟁 발생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광고의 제작·설치·운용 등에 관련된 분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열차운행 및 업무지장 등으로 발주자나 제3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광고료 등 제반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4. 광고 관련 제반규정 및 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광고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제9조 제2항 제1호를 이유로 3회 이상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중도 해지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전액 귀속합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경·지시, 공익목적 또는 도시철도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찰을 제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합니다.

제19조(원상회복)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방송장치를 훼손하거나 파손 시에는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의 법령위반, 계약위반, 계약상대자 또는 보조자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1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광고대행 사업을 위한 활동 중 발주자의 역사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통지) ①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은 문서로 합니다.

②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4조(조문해석) 이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합니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서 등을 통해 상호간 명확히 약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쟁 등을 이유로 중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제26조(계약서의 보존) 이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1_ . . .

발 주 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인)
계약상대자 :

계약대상 역사 현황

연번	역명	비고	연번	역명	비고
1	가산디지털		26	이수(7)	
2	광화문		27	건대입구(7)	
3	까치산(5)		28	답십리	
4	화곡		29	어린이대공원	
5	광명사거리		30	이태원	
6	오목교		31	중계	
7	철산		32	남구로	
8	여의도(5)		33	사가정	
9	군자(5)		34	면목	
10	고속터미널(7)		35	신대방삼거리	
11	학동		36	송실대입구	
12	노원(7)		37	우장산	
13	천호(5)		38	아차산	
14	청담		39	강남구청	
15	하계		40	군자(7)	
16	강동		41	디지털미디어시티	
17	논현		42	광나루	
18	천호(8)		43	남한산성입구	
19	장한평		44	신정	
20	목동		45	마포	
21	응암		46	수락산	
22	상봉(7)		47	장지	
23	암사		48	내방	
24	공덕(6)		49	종로3가(5)	
25	서대문		50	새절	

※ 위 역사는 ‘16년도 승차인원기준 상위 50개 역사로 사업자가 영업에 필요시 50개 역사 한도 내에서 대상 역사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공익적 목적 등 공사의 사정으로 불가 할 경우와 7호선 연장구간 9개 역사(까치울~부평구청)는 제외됩니다.